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201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99호, 2026.10.1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9월 30일
보건복지부장관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제9장의 ‘자2 창상봉합술 및 자248 복막세척술’란 다음에 ‘자248-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자248-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	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의 급여기준	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(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, HIPEC)은 종양감축술(Cytoreductive Surgery, CRS) 후 수술실에서 연속하여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음 -

항 목	제 목	세부인정사항
		1. 급여대상 가. 난소암 기원 복막암 나. 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다. 복막종피종 2. 상기 1.의 가.~다. 암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(체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) 비용을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%로 적용함.

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			비고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
I.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			I.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			
<신설>	<신설>	<신설>	자248-1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 법	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 법의 급여기준	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(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, HIPEC) 은 종양감축술(Cytoreductive Surgery, CRS) 후 수술실에서 연속하여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. - 다 음 - 2. 급여대상 가. 난소암 기원 복막암 나. 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 액종 다. 복막중피종 2. 상기 1.의 가.~다. 암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치료재료(체 강순환용 가온관류세트) 비용을 「선별	(제정 사유)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

현행			개정			비고
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항목	제목	세부인정사항	
					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%로 적용함.	